

대전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20가단152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2. 11. 15 선고 2021나119498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20가단15291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대웅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

변 론 종 결 2021. 7. 8.

판 결 선 고 2021. 8. 12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와 C 사이의 2019. 7. 14.자 50,000,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

5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의 모친 C에게 2003. 10. 30. 2,000만 원, 2004. 4. 16. 500만 원 합계 2,500만 원을 대여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대여금’이라 한다), 2013. 7. 12.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모친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(대전지방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가단42236)을 받았다.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.

나. C의 시숙인 D(C의 배우자 E의 동생)은 2012. 12. 14., 망 F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G 지상 주택(이하 ‘이 사건 주택’이라 한다)을 임대차보증금 4,000만 원, 월 차임 37만 원에 임차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),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D은 2018. 12. 14. F가 사망하여 F의 상속인 H과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피고가 2019. 8.경 H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,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9. 8. 2.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,000만 원, 전세권자 피고, 존속기간 2019. 7. 14.부터 2022. 7. 14.까지로 하는 전세권(이하 ‘이 사건 전세권’이라 한다)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.

다. 한편,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2. 12. 14.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배우자 E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, 피고가 2012. 12. 14.부터 현재까지 임대인 망 F 혹은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다툼 없는 사실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

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(전세금)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.

우선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(전세금) 5,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인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차보증금(전세금) 5,000만 원의 반환 채권은 C가 아닌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(전세금) 5,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더욱이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, 원고는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갱신 혹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C의 채무초과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.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심우성